

헨리 조지의 分配理論 研究*

李 在 律**

논문초록 :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분배의 불공평문제와 경기변동의 심화를 야기시키는 특수한 생 산요소이다. 이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Henry George의 경제사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토 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지역에서는 특히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지대의 상승이 진보 가운데 빈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았고, 그 대책으로 지대 100%를 조세로 흡수하는 토지가치세를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자론에 큰 결합이 있음이 발견되며, 그의 지대증가론에 과장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한계생산력설의 전개에 중요한 기 여를 하였으며 그의 지대공유사상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 지대, 토지가치세, 이자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 B3

I. 序 論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지대는 다른 요소가격보다 더 빨리 상승하 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른 요소에 비해 토지가 희소한 지역에서 지대와 지가는 매우 높고 또한 주기적으로 심한 토지투기가 발생하기 쉽다. 그 결과 심각한 분 배문제와 경기변동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최초로 체계적으 로 연구한 사람이 Henry George(1839-1897)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George는 체계적인 교육 을 받은 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극한 가난 속에서 중등교육만 받은 후 여러 직

* 본 연구는 1995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다. 익명의 심사자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업을 전전하였고 마침내 언론인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 대도시의 번영과 빈곤을 동시에 목격하였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저술작업에 몰두하였고,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강연을 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마침내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뉴욕 시장에 출마하도록 권유받아 거의 당선할 뻔했으나 실패하고 두번째 선거캠페인 중 병사하였다.¹⁾ 그는 비록 독학이었지만 당시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였고, 그 자신의 체계적인 경제학 틀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George는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을 옹호하기도 하였지만 분배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19세기 후반 미국이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었던 모순된 현상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고전파 경제학의 빈곤원인에 대한 설명은 인구론과 임금기금설이었다. 그는 빈곤의 원인을 인구증가에 돌리는 두 이론을 비판하고, “현존 이론이 과잉인구에 돌리는 결핍과 비참의 원인은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의”(George(1992), p. 141)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총생산물은 증가하나 분배에 있어서 지대의 비중이 크고 또한 지대의 분배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George는 그의 분석에 있어서 Ricardo의 지대이론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아 생산물이 먼저 지대와 나머지(임금과 이자의 합)로 분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임금과 이자로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설명하는 독특한 임금론과 이자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자가 자본의 생산성의 대가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자는 자연의 재생산력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자와 임금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므로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은 없고, 지대증가 경향이 공동의 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분배이론을 기초로 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방안이 지대에

1) Andelson • Dawsey(1992) 참조.

2) Charles Collier(1979a), p. 65 참조. Schumpeter도 George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는 독학 경제학자였지만 경제학자였고, 정식 학문적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경제학 지식과 논리의 대부분을 독학으로 습득하였다.” Schumpeter(1981), p. 865.

대해 100% 과세하는 토지가치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1879년에 발간된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은 베스트셀러로서 Tolstoi와 Bernard Shaw, 孫文 등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고,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의 토지제도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³⁾

이 저서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추종자와 함께 비판자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비판논객으로서 영국의 Alfred Marshall과 미국의 J. B. Clark, Richard T. Ely, Edwin R. A. Seligma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제도권 경제학계의 대표로서 독학 출신인 George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현대의 조지주의자인 Mason Gaffney와 Fred Harrison에 따르면 Clark, Ely, Seligman 등의 미국 신고전학파 형성자의 주관심은 George의 사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신고전파 경제학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기도가 성공하여 오늘날 George의 사상은 표준적 교과서에서 잠깐 언급되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⁴⁾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George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졌고 오늘날 주류학계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의 사상에 공감하는 소수 학자의 연구가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토지가치세운동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단순히 사회사상가 또는 사회운동가로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George의 경제사상을 경제이론 및 正義論의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의를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진보는 지대의 증가를 초래하고 그 결과 노동자 빈곤을 낳으므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대 전체를 사회화하는 토지가치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George의 분배론을 주로 논리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의 정의론을 현대정의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George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고 오류도 있지만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Ⅱ절에서는 George의 지대이론을 Ricardo의 차액지대론 및 한계생산력설과 대비시켜 검토하였다. 제Ⅲ절에서는 George 이자론의 문제점을 지적하

3) 李正典(1988), p. 297, Andelson · Dawsey(1992) 참조.

4) Harrison(1994), Gaffney(1994) 참조.

였고, 제IV절에서는 George 임금이론의 문제점과 함께 한계생산력설의 태동에 기여한 측면을 기술하였다. 제V절에서는 George가 진보 가운데 빈곤과 경기변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토지가치세의 규범적 측면을 정의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VI절에서는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이 논문의 몇 가지 기여를 강조하였다.

II. 地代理論

1. 지대발생의 원인과 지대의 크기

George는 토지가 생산의 제1차적인 요소이며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도 지대⁵⁾와 나머지 부분으로 먼저 결정된 후 그 나머지가 이자와 임금으로 분배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분배론을 전개하면서 지대론부터 시작한다.

George는 Ricardo의 차액지대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따르면, 지대는 동일한 투입으로 한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 George는 지대법칙이 확정되면 임금법칙 또는 임금과 이자의 법칙도 확정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시의 임금론이 이 인식을 방해하였다고 한다.⁶⁾ 말하자면 지대가 결정되면 나머지인 이자와 임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text{생산물} = \text{지대} + \text{임금} + \text{이자} \quad (1)$$

그러므로,

$$\text{생산물} - \text{지대} = \text{임금} + \text{이자} \quad (2)$$

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 단순한 관계가 인식되는 순간 이제까지 모호했던 부분

5) 지대는 “토지나 다른 자연적 능력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때문에 귀속되는 생산물의 일부”라고 정의된다. 그러므로 토지개량물에 대한 대가는 지대가 아니라 이윤이며, 반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발생하는 귀속지대는 지대에 포함된다(George(1992), p. 165). George의 지대 정의는 Ricardo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6) 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을 보면, 지대법칙은 한계원리, 임금법칙은 임금기금설 등으로 서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George는 이 점을 비판하였다. 반면에 George의 분배이론에서 지대와 나머지 부분은 한계원리에 의해 일관성 있게 결정되고 또한 완전분배된다.

을 대낮같이 밝혀 준다고 했다. 그는 이 항등식을 통해 지주계급과 노동자-자본가계급 연합 간에 이해대립이 존재함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노동자와 대립되는 계급은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지주계급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뒤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George는 임금률과 이윤을 사이에 동반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진정한 계급대립의 소재가 바로 그 곳임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사실 앞의 식 (1), (2)만으로 본다면, ‘생산물－이자＝지대 + 임금’이라는 식도 가능하며, 따라서 생산물에서 이자를 제한 잔여가 지대와 임금으로 분배되고, 이자가 지대와 임금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George는 여기에 자신의 자본관과 윤리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즉 자본은 축적된 노동으로서 광의의 노동의 하위개념이며, 이자와 임금이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것과는 달리 지대는 공유물인 토지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것을 개인이 전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⁷⁾ 이런 점에서 지대는 나머지 부분과 성질이 다르며, 또한 단순히 요소소득의 한 항목이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소득으로서 부당하게 임금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다.⁸⁾

George의 주장 전반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했던 Marshall도 Ricardo-George의 지대결정이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Coase⁹⁾ (1969), p. 192). 당시 미국 신고전학파 형성자의 대표적 인물인 Clark도 토지와 노동이 결합될 때 지대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초과하는 잉여의 합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차액지대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잉여로서 결정되는 지대가 한계생산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Clark(1902), pp. 190-205).

7) George는 소유권의 정당한 근거는 노동 또는 노력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은 Locke의 재산권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George(1992), p. 334 참조.

8) Lydall(1979), p. 18 참조. 역사적으로도 영국의 지주는 나폴레옹전쟁과 곡물법에 의해 노동자와 자본가의 희생하에 이익을 얻었다.

9) 『진보와 빈곤』이 발간된 후 4년이 지난 1883년 미국과 영국 양쪽에서 George는 Marshall보다 더 유명해졌던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만 George의 책이 이미 1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이것은 J. S. Mill, Alfred R. Wallace 등이 일으킨 토지개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Marshall은 1883년 브리스톨에서 ‘Henry George의 진보와 빈곤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공개강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George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Marshall은 동료인 Henry Foxwell과 철학자 시지윅으로부터 이 강의를 출판하도록 촉구받았으나 결국 출판하지 않았다. 1969년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Ronald Coase가 Marshall의 강의와 함께 Marshall과 Wallace 사이의 서간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Clark는 자본과 자본재를 구별하면서,¹⁰⁾ “토지는 파괴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자본재”(Clark(1902), p. 118)이며, 토지는 자본재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그는 토지가 다른 자본재와의 차이점으로 지적되는 두 가지 속성, 즉 토지의 양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지대는 차액(또는 잉여)이라는 점을 검토한 후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Clark (1902), pp. 338-340). 요컨대, 정태적으로는 토지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재의 양도 고정되어 있으며, 한계생산력설에 의하면 어느 소득도 차액(잉여)의 성질을 떨 수 있다는 것이다.

Clark는 지대(rent)¹¹⁾는 “어떠한 것이든 구체적인 도구가 벌어들이는 금액”(Clark(1902), p. 123)이라고 정의하였다. 그것이 전물이든, 토지이든, 기계이든, 원료이든 모두가 지대를 놓는다고 한다. 반면에 영구기금으로서의 자본은 이자를 얻는다. 그는 지대와 이자의 관계를 “지대와 이자는 동일한 소득을 다른 방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지대는 자본재가 버는 금액의 총계인 데 반해, 이자는 영구기금으로서의 자본이 버는 것의 그 자체에 대한 비율이다(Clark (1902), p. 124)”라고 서술하였다.

금액으로 표시되는가, 비율로 표시되는가만 다를 뿐 지대와 이자는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지대(rent)는 모든 생산수단이 얻는 소득으로서 토지지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는 토지와 다른 자본재의 구별을 불필요하다고 보고 토지지대를 이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은 George의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나중에 논의될 토지가치세를 공격하기 위한 개념적인 토대를 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주어진 가정하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개념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말과 같이 단기에는 토지와 자본의 양이 모두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에는 자본의 양은 가변적이나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으며, 토지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본원적 요소라는 차이점도 있다. 그

10) Clark에 의하면 자본은 영구적(permanent)이고 가동적(mobile)인데 반해, 자본재는 소멸하고 비가동적이다. 그리고 자본은 “생산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구체적이며 물질적이다(Clark(1902), p. 116).” Clark의 자본은 바로 화폐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Hennings(1987), Vol. 1, p. 330) 이 자본이 투자되면 구체적인 자본재형태를 띠고 마모되어 소멸하지만 자본재 가운데 있는 자본은 반제품이나 완제품의 형태로 형태변화를 하면서 영구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11) 오히려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나,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지대라고 하겠다.

런 점에서 분석상 어느 쪽을 택하든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는 정당성이라는 규범적인 측면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지대분배율의 변화

George는 임금과 이자가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바로 지대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대분배율은 일정 시점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²⁾ 이미 Ricardo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수요가 증가한다. 그 결과 보다 열등한 토지로 경작지가 확대되고, 이것은 한계내지(intra-margin)와 한계지 사이의 생산성 차이를 중대시키므로 지대의 분배율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의 영향은 경작한계의 확장¹³⁾에 그치지 않는다. George에 의하면, 인구의 증가는 일정한 지역에 인구집중을 초래하고 이것은 분업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따라서 인구조밀지역의 고생산성은 이 지역 토지에 차액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George(1992), p. 243). George는 이 둘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⁴⁾

지대분배율의 증가경향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도 유발된다고 한다. 기술진보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Ricardo와 George의 견해가 상반된다. Ricardo는 기술진보가 있으면 우등지에서만 경작해도 족하므로 경작한계를 축소시키며, 결국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의 생산성 차이를 축소시키므로 지대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¹⁵⁾ 여기서 Ricardo는 곡물수요는 인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기술진보는 곡물수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George는 이 점을 비판하여 기술진보는 생산력 증대와 함께 수요증가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식품수요 역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

12) George는 지대의 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대분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더 심충적인 문제는 지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생산력은 증가하는데 생산물 중 지대로 분배되는 비율이 증가되게 하는 힘 또는 필연성은 무엇인가이다.” George(1992), p. 227.

13) 보다 열등한 토지로 경작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14) 이 둘째 과정의 발견은 George의 독창적인 것으로서 그 자신도 주장하듯이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15) Ricardo(정윤형 역, 1991), pp. 146-151 참조.

음과 같이 말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사람에게서 식량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위장의 적은 용량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고, Ricardo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말은 명백히 위장이 차면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만 타당하다. 식량에 대한 인간의 수요는 한계가 없다. ……농민의 생존물자인 흑빵과 채소를 공급하는 데에는 얼마 안 되는 땅이면 족했지만, 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수십만 에이커가 필요했다”(George(1992), p. 248). 식량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요는 “수요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증가한다”(George(1992), p. 245).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능력 증가는 바로 일반적인 수요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George의 통찰은 놀랍다.¹⁶⁾ 그리고 George는 더 나아가 기술진보는 경작한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에 의해 노동-토지 비율이 낮아진다면 기존의 노동력이 모두 고용되기 위해 경작한계의 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¹⁷⁾

George는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급속히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장래의 지대상승에 대한 확고한 기대 때문에 지가상승을 기대하게 되고, 이것이 투기적인 토지수요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장래의 지대상승기대는 지가상승기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투기적 보유가 증가한다. 그 결과 토지를 투기적으로 보유할 뿐 이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경작한계를 불필요하게 더 열등한 토지에까지 확대시켜 지대분배율을 한층 높이는 경향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구증가, 기술진보, 토지투기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지대분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임금과 이자의 분배율은 감소하며 임금률과 이자율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하락하기조차 한다고 George는 주장하였다.¹⁸⁾

George의 지대분배율 증가 주장은, 지대증가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정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 Ricardo의 주장과 흡사하다. 이 명제는 우선 경제사상으로 실증이 되지 않는 것 같다. Marshall은 당시 영국의 지대는 총소득의

16)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 가능성을 간파한 것이 George의 기여이다.

17) 조지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있어도 완전고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능력의 증대가 수요증대를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8) 기술진보가 없을 경우에 경작이 확대되면 지대분배율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있을 때에는 지대뿐 아니라 임금과 이자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대분배율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W. H. Mallock은 영국의 경험적 자료에 의하면 1801년의 지대분배율은 20%였고, 1914년에는 4%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¹⁹⁾ E. H. P. Brown 등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서 1880년경 지대분배율은 14.8%였고, 1960년경에는 5.8%로 감소하였다.²⁰⁾ 한국의 경우는 이와 다른 데, 임료소득비율은 1963년 6.0%, 1974년 4.7%, 1980년 5.8%로 순환성을 보이면서도 거의 일정한 추세를 나타냈으며, 그 비중은 미미했다.²¹⁾ 이 자료만 보면 George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이나 한국의 자료에 나타난 지대에는 토지지대와 건물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고,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대가인 귀속지대는 제외되어 있다. 현재의 지가를 기준으로 귀속지대를 추정하여 포함시키면 앞의 결과와는 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대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이다.²²⁾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Ricardo-George의 동태적인 분배론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급속한 자본축적현상이 무시된 점, 그리고 기술 진보의 속성에 따라 그것이 지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염밀하게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III. 利子理論

1. 이자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논거

George는 당시 표준적 교과서에서 인정되고 있던 이자가 금욕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을 부정하였고, 동시에 이자폐지론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자가 생산성 증가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 Frederic Bastiat의 이자정당화 논변에 대해서도, 그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대폐의 예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George는 보여 주려고 했다(George(1992), pp. 176-179).

19) Harrison(1979), p. 86.

20) Harrison(1979), p. 88에서 재인용.

21) 한국은행(1982a), pp. 292-293 참조. 1986년 이후 『경제통계연보』나 『국민계정』에서 분배국민소득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료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합해서 영업잉여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후의 임료소득 추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22) 그러나 George의 주장에 과장된 면이 있음은 오늘날 George를 추종하는 新조지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대가 모든 것을 삼켜 버린다는 명제가 그러하다. Andelson (1979), p. 382 참조.

제임스(갑)라는 한 목수가 10일 걸려 대패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290일 쓸 수 있으며, 1년의 노동일은 300일이다. 윌리엄(을)이라는 다른 목수가 연말에 똑같은 종류의 새 대패를 돌려주기로 하고 빌리자고 제안할 때 갑은 거절한다. 그래서 을은 추가로 널빤지 하나를 더 주기로 하고 양자는 만족하게 합의한다. 연말에 갑은 새 대패와 널빤지 하나를 받는다. 이자인 이 널빤지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대패를 사용한 대가로서 자연스럽고 공정한 보상이라고 Bastiat는 주장했다.

George는 이 논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대패를 사용할 때 1일생산량이 널빤지 1개라고 하자. 만일 대패를 빌려 주지 않는다면, 갑은 초기에 가지고 있는 대패를 290일 동안 사용하여 널빤지 290개를 생산하고, 마지막 10일 동안 다시 대패를 만들어 쓸모없게 된 대패를 대체한다. 을은 처음 10일 동안 대패를 만들어 290일 동안에 널빤지 290개를 만들고 대패는 완전히 마모된다. 기말에 두 사람은 모두 290개의 널빤지를 가지고 초기와 같이 갑에게는 대패가 있고 을에게는 대패가 없다. 만일 널빤지 하나를 이자로 받기로 하고 대패를 빌려 준다면 갑은 먼저 10일 동안 대패를 만들어 290일 동안 290개의 널빤지를 만든다. 그리고 기말에 대패와 널빤지 하나를 돌려받는다. 을은 빌린 대패를 이용하여 먼저 290개의 널빤지를 만든 후 마지막 10일 동안 대패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와 함께 반환한다. 기말의 상황은 빌려 주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 갑은 널빤지 291개와 대패, 을은 289개의 널빤지를 가진다. 갑은 유리해졌고 을은 불리해졌다. 그런데 을이 대패를 빌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대패를 만들어 기말에 290개의 널빤지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패를 빌리겠는가? 을은 이자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George는 이런 이유로 Bastiat의 이자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Bastiat가 이자의 근거라고 한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능력’은 정당하지도 않고 사실상 이자의 기초도 아니라고 George는 비판한다. 갑이 을에게 빌려 준 것은 노동자가 대패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증대된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패의 제조와 사용이 영업상의 비밀이나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²³⁾ 그러므로 대패를 빌려 주는 것은

23) George는 대패제작이 비밀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대패를 만들 수 없으므로 대패에는 증가된 생산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때 이자는 자본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독점에 대한 대가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George는 제조방법이 비밀이 아니면 누구나 자본재를

자기의 노동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특권이 아니라 10일 동안의 노동의 구체적인 결과물의 사용권을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한다.

Bastiat의 이자정당화론을 비판한 뒤 George는 이자를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그에 의하면, 돈을 쌓아 놓으면 그것은 증가하지 않으나, 포도주를 쌓아 놓으면 1년 후 가치는 증가된다. 벌통을 놓아 두는 경우나 양, 돼지, 소를 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자연의 활동력에 기인한 것이며, 생명의 성장 또는 재생산의 원리이다. George는 이자의 원인은 이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의 호환성 때문에 모든 형태의 부는 평균적인 이자율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갑이 대패를 만들어 빌려 줄 동안에 송아지를 기를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연말에 제법 큰 소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적 증식력이 없는 대패의 경우라도 이자가 지불되지 않으면 아무도 대패를 만들어 빌려 주지 않을 것이다. 읊이 연말에 대패 하나 이상 반환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주장한 것처럼 노동의 생산성 증대 때문이 아니라 시간요소, 즉 임대와 반환 사이의 1년간의 시차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흐름에 따라 얻는 이익은 자연의 생식력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는 주장했다(George(1992), p. 185). George는 분명히 이자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그 논거를 기준의 논의와는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이다.

우선 그의 Bastiat에 대한 비판을 보면, 그의 논리에는 오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eorge는 읊이 마음만 먹으면 대패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대패라는 자본재를 만드는 동안에는 소비재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George는 간과하였다. 같은 예컨대, 10일 동안의 생활비를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10일 동안 대패를 만들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모두가 자본가이고 자본의 생산성 증가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읊이 저축해 놓은 것이 없고 매일 하루종일 소비재를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다면 그는 대패를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대패 없이 맨손으로 가령 하루 0.5개의 널빤지를 만들거나 대패를 빌려 하루 1개를 만들고 1년 후 대패사용료로 1개를 지불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George는 자본재 생산에 저축이 필요함(소비수준의 저하)을 간과했기 때문에 자본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자본에 대해 대가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축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으므로 자본재는 희소하게 된다.

앞의 예에서 보듯이 대패는 분명히 노동생산성을, 예컨대 하루 0.5개에서 1개로 증가시킨다. 자본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왜 현재의 소비수준을 낮추는 고통을 감수하고 자본재를 생산하겠는가?

이자의 원천을 자연의 재생산력에서 찾은 George의 사상은 이후의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그의 추종자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George의 이자론은 그의 체계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간주될 정도로 약점이 많다(Collier(1979), p. 265).

2. 이자율의 결정원리

이와 같이 이자의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논한 후 George는 이자율 결정이론으로 들어간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 명제를 강조한다.

첫째,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둘째, 자본의 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증감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노동을 자본의 생산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투입함으로써, 그리고 부와 자본 간의 전환을 통하여 자본이 증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George(1992), p. 195).

George는 우선 이자율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 말한다. 자유로운 조건하에서 이자율의 상한은 자본의 생산증가분이고, 하한은 자본의 대체가 가능한 수준, 즉 순이자율이 영이 되는 수준이다. 상한 이상에서는 자본차용은 손실을 의미하고, 하한 이하에서는 자본의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다.

George에 의하면, 상한을 결정하는 것은 특수한 형태의 자본의 효율 중대가 아니라 자본일반의 평균증식력이다.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이 이자의 원인이므로, 이자의 최대율은 그 힘의 크기와 그것이 생산에 개입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정상이자율은 최고치와 최저치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모든 요인을 고려했을 때(안전감, 축적 욕망 등) 자본의 보수와 노동의 보수는 동일하게 된다. 노동과 자본은 동일한 것, 즉 인간노력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며, 노동은 자본 속에 용축되어 있으면서 조금씩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노동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자유경쟁조건하에서 임금과 이자 사이에 균형이 성립된다고 한다. 임금과 이자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이 상호 전환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George(1992), pp. 198-199). “임금이 내려가면 이자도 비례해서 내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노동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노동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또 이자가 내리면 임금도 비례해서 내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본의 증가가 억제될 것이다”(George(1992) p. 199). 그러므로 이자와 임금이 같이 상승 또는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arshall은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해 George의 견해를 비판하고 그것과는 다른 설명을 제시하였다. “노동과 자본 사이에 생산물이 분배되는 비율은 그것의 상대적 회소성에 달렸다”(Coase(1969), p. 194). 그러므로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자본과 노동은 회소한 나라에서는 이자와 임금 모두 높고, 영국처럼 자연자원에 비해 자본과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자와 임금 모두 더 낮다. 그러나 인구는 많고 자본은 부족한 동유럽에서는 서유럽보다 임금은 낮고 이자는 높았다. 그런데 George는 전자의 사실만 보고 이자와 임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도 제시하였는데, Marshall은 George가 주장한 사실과 이론 모두 틀렸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George의 임금과 이자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주장의 대전제는 노동은 항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노동이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축적해 놓은 소비재가 있거나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회생이 필요한데, George가 이 점을 간과하여 노동은 언제든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 점에 큰 문제가 있다. 저축여력이 없다면 아무리 이자가 상승해도 노동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과 이자가 균형되는 수준에서 임금과 이자가 결정된다는 George의 이자설과 임금설은 불완전하다. George는 자본은 노동의 한 형태이므로 자본과 노동의 이해는 일치하고 지주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 몰두한 나머지, 물적 자본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함을 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George는 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부인하고 자연의 증식력에서만 이자가 나온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오류로 말미암아 자본에 대해서는 한계생산개념을 적용할 수 없었고 이자결정이론이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IV. 貨金理論

1. 임금기금설 비판

Smith에서부터 짹트고 James Mill과 McCulloch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학파의 임금이론은 임금기금설이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자수와 노동고용에 쓰이는 자본량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Rubin(1979), p. 315). 노동의 고용에 쓰이는 자본, 즉 임금기금의 양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노동자수로 나누면 임금률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금기금설의 중요한 함의는 임금기금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과 임금이 과거에 축적된 자본인 임금기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설에 의하면, 임금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자본가의 저축증가와 노동자의 인구억제이다. 단기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파업 등의 행위는 자본가의 원활한 자본축적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노조에 의한 임금인상은 고정된 임금기금 가운데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노조활동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임금기금설에 의하면 노사 간에 이해가 대립하지 않고 일치한다(Gordon(1973), pp. 14-18). 그리고 노동자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인구증가이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George의 지론인지대가 임금을 압박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그래서 George는 임금기금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만일 임금이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의 양과 고용에 지출될 자본의 양 간의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면 노동의 상대적 희소성을 반영하는 고임금은 자본의 상대적 풍부성을 반영하는 저이자와 동행해야 하고, 반대로 저임금은 고이자와 동행해야 한다”(George(1992), p. 19). 그러나 당시 영국보다 미국에서 임금과 이자가 모두 더 높았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오히려 임금과 이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임금기금설은 틀린 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둘째, 보다 본질적인 비판은 임금의 원천에 관한 비판이다. 즉 임금기금설은 임금이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 학설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를 모델로 하므로 임금재는 1년에 한 번씩 생산되며, 전년도에 생산된 곡물이 금년도 곡물이 생산되는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선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에도 노동자는 부양되어야 하는 사실을 강조한 이론이다. 그러나 George는 “임금은 자본으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생산물로부터 나온다(George(1992), p. 23)”고 주장하였다. 그는 노동이 고용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자본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는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이 예증하였다. 자가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임금으로 얻으며,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생산의 결과물인 현물로 임금을 받는 경우나, 포경선원의 경우처럼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에 노동생산물을 임금으로 받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산기간이 긴 배를 만드는 노동자도 먼저 가치를 창조한 다음에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는 그 임금으로 현재 생산되는 임금재와 교환할 수 있으므로 그는 임금재를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노동생산물에서 지불받는다는 것이다.

George의 임금기금설 비판에 대해 Marshall은 다음과 같이 혹평하였다. “그의 비판은 오류로 가득하고, 임금이론이 현대적 언어로 진술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Coase(1969), p. 192). George의 첫째 비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사실을 잘못 본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비판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둘째 비판, 즉 임금이 임금기금(자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생산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고전학파는 곡물과 같은 임금재가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현상, 즉 가을에 추수되는 곡물을 임금기금으로 축적했다가 다음해 가을에 추수될 때까지 선불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편화하여 생산기간이 매우 길고 생산과 소비 간에 큰 시차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거시적인 실질임금수준은 임금기금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²⁴⁾ 그러나 George는 연속적인 생산을 상정하므로 노동자가 소비하는 임금재는 과거의 생산물이 아니라 바로 本期의 생산물이 된다. 그러므로 연속적인 생산을 가정한다면 임금은 노동생산물에서 나온다는 George의 주장이 옳다.²⁵⁾ 1년에 한 차례 생산되는 주곡과 같은 것을 제외한 많은 농산물과 공산

24) 임금기금설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임금기금설의 자본은 화폐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재라는 점과 이 학설은 미시적인 임금결정이론이 아니라 거시적인 대략적 설명이라는 점이다. Ekelund · Hebert(1990), pp. 192-193 참조.

25) George는 연속적인 생산함수를 제시한 최초의 저술가로 알려져 있다. 연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임금이 선불이든 아니든 임금수준이 과거의 축적에 얹매일 필요가 없다. Hebert(1979), p. 60 참조.

품 소비재는 연속적으로 생산된다. 그러므로 임금은 자본(임금기금)으로부터가 아니라 현재의 노동생산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George가 임금의 원천이 현재의 노동생산물이고 임금수준이 과거에 축적된 임금기금이 아니라 현재 노동생산물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힌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것은 한계생산력설이 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였고, Clark도 George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였다(Clark(1902), p. 306).

2. 임금■ 결정이론

George에 의하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을 경우 토지와 노동만 생산에 투입된다면, 임금은 한계지에서의 노동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토지, 노동, 자본 모두가 생산에 참여하면,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임금과 이자로 나뉘어지는데, 임금과 이자로 각각 얼마나 분배될 것인가는 앞의 이자율 결정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상호전환에 의해 성립되는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George의 설명이다.

George의 임금이론에 대해서 Clark는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즉 자신이 한계생산력설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George의 임금이론이었음을 『부의 분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임금이 무지대 토지에서 노동자가 창출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제시한 사람은 Henry George였으며, 이것이 처음으로 노동의 생산물을 다른 요소의 생산물과 분리하는 방법을 찾게 만들었다.” 자본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George의 임금결정에 관한 설명이 Clark의 한계생산력설로 발전된 것이다. 문제는 자본과 노동이 모두 사용될 경우의 분배결정문제이다. George는 한계생산력설에 한 발짝 다가갔지만 자본은 노동의 응결체에 불과하므로 노동은 항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본에 한계생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토지, 노동, 자본 모두가 생산에 투입될 경우 분배이론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점에서 그는 Marshall의 비판을 받은 것이다.

Marshall은 한계생산력설에 입각하여 자신의 분배이론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하였다. “위대한 분배법칙은 한 생산요소가 더 유용할수록, 그리고 더 희소할수록,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커진다는 사실이다”(Coase(1969), p. 193). George는 Ricardo의 곡물모델을 계승하여 자본/노동 비율이 일정하다

는 가정하에 지대와 나머지 부분으로 분배한 뒤, 나머지가 임금과 이자로 분리될 때는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상호전환된다고 보는 순차적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반해 Marshall은 노동과 자본은 쉽게 상호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이 단기에는 고정되어 있으며, 요소 간의 상대적 희소성이 요소가격을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Marshall의 분배법칙에 따르면 요소가격은 생산요소의 희소성 정도와 요소의 질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임금이 낮은 이유는 노동공급이 지나치게 많고 노동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빈곤의 원인이 단지 지대의 증가 경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공급에 비해 노동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Marshall은 당대에는 어렵지만 몇 세대 후에는 빈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방법은 노동수요를 늘리는 것과 인구증가를 줄이는 길이었다.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자본 간의 경쟁과 교육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Marshall은 실증적 측면도 언급하였다. 그의 첫째 강의에서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George의 경험적 주장을 다루었다. Marshall은 실제로 부의 증대와 함께 빈곤이 증가했는가를 묻고, 영국의 역사적 실례를 인용하여 영국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빈곤이 감소했음을 보여 주었다. 다만, 부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감소는 더디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경제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18, 19세기 영국의 실질임금은 증가했음이 입증되고, 그 이후에도 실질임금의 증가경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George의 경험적 명제는 과장된 것임이 인정되는바, 오늘날 신조지주의자들도 이 점에 동의한다(Hebert(1979), p. 59).

요컨대, George는 자신의 취약한 이자론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빈곤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인으로 지대증가를 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대증가의 경향이 빈곤의 한 원인일 수는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V. 土地價值稅

George는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대분배율의 증가 때문이라고 보았

다. George가 토지가치세제의 도입을 주장한 데에는 지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대를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빈곤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치세 도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규범적으로 현재의 사적인 토지소유권은 부당하다는 윤리적 확신이다. 이것은 앞에서 고찰한 그의 분배이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역인 도덕철학에 관한 것이다. 토지 소유제와 지대의 사적 전유는 왜 부당한가? George는 정당한 소유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개인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1차적으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힘의 사용에 대한, 그리고 자기 노력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근거는 인간이 독립된 유기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서 발생하고 또 이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개인적 권리가 아니겠는가? 독립된 유기체라는 의미는 인간이 각자 특정한 두 손과 특정한 두뇌와 특정한 위장을 가지며, 그리고 한정성, 일체성, 독립성을 가진 전체라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투입되는 노동도 자기 자신의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어느 사람이 만들거나 생산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을 향유·사용·교환·증여할 수 있다. 그 밖의 누구도 이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람이 갖는 권리의 배타성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명백하고 다틀 수 없는 권리가 발생한다(George(1992), p. 334).

George는 자신의 신체와 노동 그리고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를 자연권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는 것은 자기 노동의 산물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자연법은 노동의 권리 외에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생산자가 생산으로 인해 배타적 보유와 향유권을 갖는다면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의 보유와 향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부당하다”(George(1992), p. 336). 어느 인간의 창조물도 아닌 토지는 사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George의 주장이다.

George는 지대사회화의 근거를 하나 더 제시한다. 즉 “지대는 사회 전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토지 보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George(1992), pp. 365-366). 이 논거는 첫

번째 논거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Marshall은 George의 도덕철학적인 주장의 핵심은 비판하지 않고, 설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첫째, 과거에 공적 권리와 사유권의 구별이 오늘날만큼 분명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주의 행동을 오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득한 옛날에 저질러진 불의를,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벌이 돌아가도록 되돌릴 수 있는가? 원래의 지주가 그들의 소유권에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고 해도, 수많은 현지주는 자기 이마의 땀으로 토지소유권을 구입한 노동자 및 다른 사람의 후손이 아닌가? 원래의 악행자의 대표자를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없다면, 원래의 악행에 참여하지 않은 불운한 토지매입자는 비통하게 고통당해야 하는데도, 원래의 악행자나 그 대표자가 토지를 판 대금으로 구입한 다른 재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당한가? 마지막으로,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면 어느 국가이어야 하는가? 노르만족은 색슨족으로부터 힘으로 영국을 빼앗았는데, 색슨족은 또한 고대 브리튼족으로부터 빼앗았다면, 그리고 모든 원래의 불의를 되돌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대 브라튼족의 후손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가?(Coase (1969), p. 201)

이런 의문을 제기한 후 Marshall은 토지국유화를 위한 보상문제를 논의한다. 여기서는 보상문제보다 George의 도덕철학적 주장을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George의 정당한 소유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Locke와 매우 유사하나 결과는 차이가 있다(Locke(1970), pp. 303-320). George는 자신의 신체와 노동,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를 자연권으로 간주하였는데, Locke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self-ownership)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자연은 신이 인간의 생존과 안락을 위해 공유물로써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Locke는 이 공유물이 모든 공유권자들의 계약이나 동의 없이 사유화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근거는 자연의 공유물에 각자의 노동을 혼합

26) Seligman이 지적했듯이 사회의 수요가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동도 노동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없다면 생산에 투입될 필요가 없다. Andelson and M. Gaffney(1979), p. 281 참조.

했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Locke는 소유권 취득에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하고 동일하게 좋은 공유물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Locke는 이 단서가 지켜진다면 토지의 소산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도 사유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토지와 같은 자연물이 아직 매우 풍부하다고 보았음인지 토지의 사유화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토지의 회소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비록 열등지는 풍부하게 존재하더라도 우등지는 회소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벌써 이 단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Locke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다.

현대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자인 Robert Nozick은 ‘Locke의 단서’를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Nozick(1974), pp. 174-182). 그는 내 노동이 대상물에 침투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왜 내 것이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그 반면 토지의 사유화가 공유상태에 비해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시킨다고 보고 이러한 사유화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노동투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모든 사유화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토지의 사유화는 과연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시키는가? Locke도 사유제를 택한 영국의 날품팔이가 共同所有制下의 미국 인디언 추장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므로 토지의 사유화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영국 날품팔이의 처지가 미국 인디언 추장보다 나은 이유가 토지의 사유화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근로와 투자의 유인이 되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배타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지에 비극이 생긴 것이 사실인데, 토지에 대한 개인의 투자와 근로의 과실을 개인에게 보장한다면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효율적 사용은 가능하게 된다. 토지사유제 아래 노동자의 소득이 원시적인 자연상태하 추장의 소득보다 증가한다면 그것은 사유화 때문이라기보다 분업과 기술발전, 자본축적 등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토지가 풍부할 동안에는 사적 점유는 타인에게 해를 미치지 않고 개인의 효율적인 토지사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회소해지기 시작하면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고 동시에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

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유화는 토지가 회소해지는 시점, 즉 토지지대가 발생하는 시점에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는 다시 자연의 공유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Locke의 단서를 정직하게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토지는 사유화될 수 없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토지개량물만 사유화될 수 있다는 George의 주장은 Locke의 단서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George에 의하면 토지는 원천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그 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현재의 소유자에게 이전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실 토지생산물에서는 이전 과정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므로 최초 취득의 부정의한 영향이 영속적이지 않다. 그러나 토지는 불변성이 있고 회소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영속적이고 점점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이 부정의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Nozick조차도 현실의 역사적 과정이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원리와 이전의 정의원리를 위배할 경우 불의의 교정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써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인류역사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불의는 너무 심각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다 포괄적인 국가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Nozick(1974), p. 231).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마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Nozick은 최초의 토지 사유화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그가 타인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사유화의 예로써 사막에 있는 유일한 우물의 사유화를 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타인은 착취당하고 심지어 노예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George는 토지사유화는 그 결과에 있어서 바로 이 우물의 사유화와 흡사하다고 보았다. 토지 없이는 어떤 생산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주는 토지 없는 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Nozick의 논변에 의해서도 George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Nozick은 말하기를 이러한 경우 재산의 처분방식과 가격 결정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George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원래의 상태인 토지공유화로 복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가 정당한 절차로 이전되어 왔다면 현재의 소유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George의 입장은 강경하다. 노예해방시에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예, 선의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한 소유권자가 나타나 법원이 그의 권리

를 인정한다면 현소유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관습법(common law)의 원리를 예로 들면서 George는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보상 없이 토지를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George는 공유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토지가치세제를 제시하였다. 공유화의 방법으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토지를 환수한 다음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필요 이상의 충격을 주고 정부기구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결함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George의 생각이다. 그런 문제점을 피하면서 토지공유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는 제도이다(George(1992), pp. 403-407). 현재의 지주에게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그대로 인정하되, 지대의 100%를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조세는 대폭 감면하거나 토지가치세만으로 충분하면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되면 부당하게 지주의 수중에 들어가던 지대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쓰이게 되고 노동자와 자본가는 그만큼 조세를 감면받는 직접적인 혜택을 본다. 그 이외에 투자와 근로에 대한 조세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저축, 투자, 근로를 자극하여 생산의 증대가 예상되며 동시에 지대세도 증가된다. 이 제도에서는 실제의 지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지대를 징수하므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토지이용이나 소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며, 토지의 투기적 보유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Marshall은 최초 토지사유화의 부당성에 대한 George의 규범적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다만 불의를 시정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겠는가를 물었다(Coase(1969), p. 201).

Clark는 그의 저서 『부의 분배』 서문 첫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사회의 소득분배는 자연법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과 이 법칙은 만일 그것이 마찰 없이 작동한다면, 모든 생산참가자에게 각자가 창출한 만큼을 분배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이전부터 실증적인 의미와 규범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계생산력설이 현실의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의미와 각자가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분배방식은 정당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또한 그의 개념규정방식, 즉 토지와 자본, 지대와 이자의 동일시에는 이러한 정당화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것은 Clark의 제자인 Fetter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Clark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은 당시의 단일세 논의였다.……『자본과 자본소득』의 간단한 서문에서 이 원리가 농업사회주의(George의 토지가치세: 필자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이 나타나 있다. 거듭 말하건대, 그 논의는 ‘토지에 들어가 있는 자본’을 향하고 있다”(Fetter(1927), pp.142-143). Clark는 George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적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Gaffney에 따르면 Clark의 24개 저서가 George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Gaffney(1994), p. 48).

개념상 토지를 자본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지대를 이자와 같게 여긴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토지사유권과 지주의 지대수취권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지를 점유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을 노동이라고 보아 토지소유권을 정당화한다면 토지를 빼앗는 것은 더욱 큰 노동이 아니겠는가? Clark는 실증이론면에서는 George의 기여를 계승하여 한계생산력설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규범적인 면에서 토지사유권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보상 여부와 보상수준에 관한 문제는 복잡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시행과 정의 문제점과 효과분석 등은 방대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²⁸⁾

27) Clark는 『부의 분배』(1899) 이전에 출간된 『부의 철학』(1886)에서 부는 제한된 자연적 선물을 사유화함으로써 창출되며, 침입자를 격퇴하는 것이 가장 원시적인 사회상태에서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노동형태라고 하여, 토지사유권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Gaffney(1994), p. 48 참조.

28) J. S. Mill은 토지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므로 “토지재산권은 지주가 토지개량자일 경우에 한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영국의 토지재산은 그것을 경제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래서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만큼 신성한 것은 아니며, “지주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에 종속된다.” 그러나 “토지가 노동산물과 자신이나 선조의 검약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보상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의 지대는 현행대로 두고 ‘지대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할 것을 주장했다. Mill(1965), pp. 228-234, 819-821 참조.

Mill의 견해 이외에 취득가격에다 보유기간의 시장평균금리를 합해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Mill의 주장처럼 보상하면 토지가치세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은 분명 하나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VI. 結 論

George는 Ricardo의 차액지대설을 출발점으로 삼아, 분배에서 총생산물이 먼저 지대와 나머지(임금 + 이자)로 분리되고, 그 나머지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상호전환에 의한 균형의 성립으로 임금과 이자로 분배된다고 설명하였다. 지대이론은 고전학파의 이론과 거의 같지만 이자이론과 임금이론은 고전학파의 이론과 매우 상이하다. 특히 그는 자본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부정하고 이자의 정당성을 자연의 증식력에서만 구했는데, 그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 자본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본을 생산하는 동안에 소비재생산이 감소하므로 소비의 감소 또는 저축이 필요함을 무시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지대를 제외한 잔여가 임금과 이자로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노동과 자본이 상호간에 완전한 전환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富도 자본의 용도와 비생산적 용도 사이에 완전한 전환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그의 이자이론에는 문제가 많아서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임금과 이자로 분배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해대립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결국 지대분배율의 장기적 증가가 진보 가운데 빈곤의 원인이라는 그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고, 실증적으로는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귀속지대를 고려할 때 지대증가가 노동자 빈곤의 중요한 한 원인일 수는 있으며, 토지가치세가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토지는 원천적으로 공유재산이어야 하고 토지가치세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부정의를 해소하고 투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George의 주장은 여전히 타당할 수 있다. George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철저한 자유경제의 신봉자였지만 토지만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 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eorge와 똑같은 형태의 토지가치세제가 아니더라도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이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경제이론면에서 George의 임금론과 연속적 생산의 개념이 한계생산력설의 출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그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경제학자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그가 인류역사에 끼친 가장

큰 기여는 가장 체계적으로 토지소유권의 공유를 주장한 그의 사회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다소나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George 이자론의 오류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빈곤원인을 지대증가에서만 찾으려는 George의 분배론에 이론적 결함이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 준 것이다. 둘째로, George의 지대공유론을 Locke와 Nozick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그 주장이 자유주의적 정의론과도 부합함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한 필자의 결론은 비록 그의 주장에 오류와 과장이 있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지대분배율에 차이가 있지만, 토지가치세는 오늘날에도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고, 또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金泰東, “토지문제와 경제발전,” 『한국경제 : 쟁점과 전망』, 안병직 역음, 지식산업사, 1995.
2. 李正典, 『토지경제론』, 박영사, 1988.
3.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82a.
4. _____, 『한국의 국민소득』, 1982b.
5. _____, 『국민계정』, 1994.
6. _____, 『조사통계월보』, 1995, 4.
7. 長谷川徳之輔, “地價仰騰의 原因分析,” 『日本의 土地問題』, 일본외무성 경제국(주식회사 청구 자료실 역간), 1991.
8. Andelson, Robert V., ed., *Critics of Henry Georg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9.
9. _____ and J. M. Dawsey, *From Wasteland to Promised Land*, Obris Books, 1992,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CUP, 1996.
10. _____ and Mason Gaffney, “Seligman and His Critique from Social Utility,” in Robert V. Andelson, ed., *Critics of Henry Georg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9.
11. Blaug, Mark,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Illinois: Richard D.

- Irwin, Inc., 1968.
12. Blyth, C. A., "Wage Fund Doctrine," in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London: The Macmillan Press Limited, Vol. 2, 1987.
 13. Cartter, Allan M., "Wage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6,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14. Clark, John Bates, *The Distribution of Wealth*, New York: Macmillan Co., 1902, [1899]
 15. Coase, Ronald, "Three Lectures on Progress and Poverty by Alfred Marshal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2, April 1969.
 16. Cord, Steven B., "Walker: The General Leads The Charge," in Robert V. Andelson, ed., *Critics of Henry Georg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9.
 17. Collier, Charles, "Henry George's System of Political Economy," *History of Political History* 11:1, 1979a.
 18. _____, "Clark and Patten: Exemplars of the New American Professionalism," in Robert V. Andelson, ed., *Critics of Henry Georg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9b.
 19. Ekelund, Jr., Robert B. · Robert F. Hebert,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3rd ed., Singapore: McGraw-Hill Publishing Co., 1990.
 20. Gaffney, Mason, "Neo-classical Economics as a Stratagem against Henry George," in Mason Gaffney and Fred Harrison, *The Corruption of Economics*, London: Shepheard-Walwyn, Ltd., 1994.
 21. _____ and Fred Harrison, *The Corruption of Economics*, London: Shepheard-Walwyn, Ltd., 1994.
 22. George, Henry, *Progress and Poverty*,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2 [1879],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23. Gordon, Scott, "The Wage-Fund Controversy: The Second Round,"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5, 1973.
24. Harrison, Fred, "Longe and Wrightson: Conservative Critics of George's Wage Theory," in Robert V. Andelson, ed., *Critics of Henry Georg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9.
25. _____ "Who's Afraid of Henry George?," in Mason Gaffney and Fred Harrison, 21번 참고. 1994.
26. Hebert, Robert F., "Marshall: A Professional Economist Guards the Purity of His Disciple," in Robert V. Andelson, ed., *Critics of Henry Georg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9.
27. Hennings, K. H., "Capital as a Factor of Production," in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 I , Macmillan, 1987.
28.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29. Lydall, Harold, *A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79.
30. Mill, John Stuar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5.
31.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4, 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 지성사, 1983.
32. Ricardo, Davi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I , ed. by Piero Sraff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정윤형 역, 『政治經濟學 및 課稅의 原理』, 비봉출판사, 1991.
33. Rubin, Issac Ilych,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tran. Donald Filtzer, Ink Links, 1979.
34. Schumpeter, Joseph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George Allen & Unwin, 1981 [1954].